

과실 소견서

1. 사고개요

- 가. 사고일시 및 장소
- 1) 일시 : 0000-00-00-00:00
 - 2) 장소 : 노외 주차장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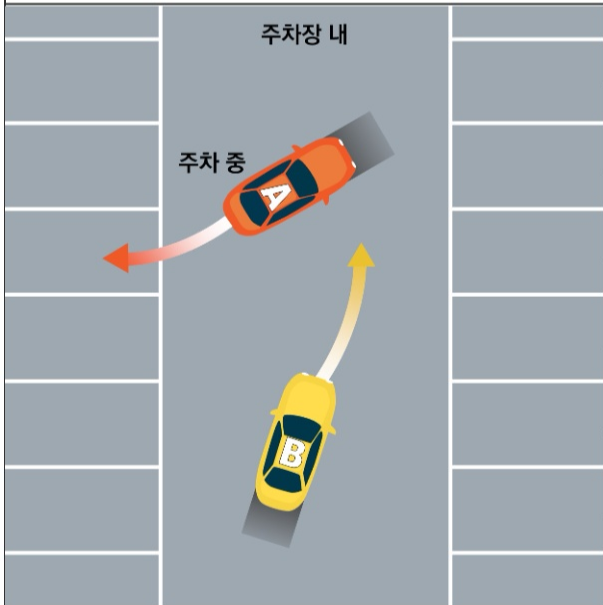
- 나. 사고관련 차량
- 1) 자차 차종 : A차량 세단
 - 2) 대차 차종 : B차량 SUV

다. 발생개요

주차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A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하던 B차량이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

라. 사고 검토 결과

고객님의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차51-2유형으로 판단 되며 A차량에 해당합니다.
과실 비율은 0%로 추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차51-2	주차구획으로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A : (A) 선행 주차진행		B : (B) 후행 추월	
수정요소			A	B
	과실비율		20	80
	A 주차 신호불이행·지연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서행 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출처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은 법정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3항, [제21조] 1항, 3항, [제38조] 1항에서는 횡단·유턴·후진 제한, 도로 진입 시 정지 및 서행 의무, 앞지르기 방법, 그리고 차의 신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을 해서는 안 되며,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좌측에서 해야 하며, 앞지르기 시 반대 방향 차량과 앞차의 속도·진로를 충분히 고려하고,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화를 이용해 행위 종료 시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 사고 개요

본 사고는 A차량이 주차 공간에서 우조향과 함께 출차하던 중, 우측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B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해 있다가 다시 주행하던 중, 우측 라바콘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존재하여 다시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던 상황에서, 주차장에 진입해 있던 B차량이 A차량이 주차했던 주차 공간으로 후진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충돌 부위는 A차량 좌측 뒷헨다 및 타이어 휠, B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사고 당시 A차량은 출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주차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주차장 내 사고의 과실 판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도표 및 일반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도로교통법 조항은 해당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제공하신 조항을 중심으로 각 차량의 주의의무를 분석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하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 B차량은 주차 공간으로 후진 진입을 시도하기 전 일시정지하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대로 후진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후진은 후방 및 측방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진행해야 하는 운전 동작으로, 특히 주차장과 같이 다른 차량의 출차·입차 동작이 빈번한 공간에서는 후진 전 후방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B차량은 A차량이 주차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후방 확인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해당 주차 공간으로 후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 및 주차 동작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의 후진에 관한 주의의무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후진을 하는 경우 등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취지상 후진 시에는 후진등 점등 등을 통해 주변 차량에 후진 의도를 알려야 합니다. 본 사고에서 A차량은 출차 후 라바콘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 주차 공간으로 후진하는 동작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주차 공간 내로 복귀하는 동작으로서 통상 후진등 점등이 수반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A차량의 방향 상태 및 후진 동작은 후행하던 B차량이 A차량의 주차 공간 진입 의도를 인식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B차량은 A차량이 주차 공간으로 진입하려는 상태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 주차 공간으로 후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 B차량은 후진 전 일시정지 없이 후진을 진행하였으며, 차량 연식 대비 사이드미러,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등의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후진 당시 이러한 장치를 활용하여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였다면 주차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A차량을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B차량이 A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 진입을 진행한 점은, 후방 확인 및 안전운전 의무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A차량은 출차 중 우측에서 진입하는 B차량을 확인하고 정지하는 등 주변 차량에 대한 확인 동작을 취하였고, 라바콘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차 공간으로 후진 복귀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사고 종합 분석

본 사고는 A차량이 주차 공간에서 출차하다가 라바콘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 주차 공간으로 후진 복귀하던 중, 주차장에 진입해 있던 B차량이 동일 주차 공간으로 후진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분석됩니다.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를 위한 시설이므로, 선행 차량의 주차구획 진입 동작이 후행 차량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선행 차량의 주차구획 진입 동작이 우선시되며, 후행 차량은 주차 공간을 물색하거나 이용하는 선행 차량이 주차 공간으로 진입할 것을 항시 예상하여 최소한의 회전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고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첫째, A차량은 출차 중이었으나 주차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라바콘 회피를 위해 다시 주차 공간으로 복귀하는 동작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A차량의 방향 상태 및 후진 동작은 후행 B차량이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B차량은 후진 전 일시정지 없이 후진을 진행하였고, 사이드미러·후방카메라·후방센서 등을 활용하여 후방을 확인하였다면 A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충돌 부위가 A차량 좌측 뒷헨다·타이어 휠과 B차량 우측 뒷 범퍼라는 점은, 양 차량이 동일 주차 공간을 향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부끼리 충돌한 형태와 정합적이며, 이는 B차량이 A차량이 복귀하려는 주차 공간으로 후방 확인 없이 진입하였음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본 사고의 주된 원인은 주차 공간으로 복귀하려는 A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후진 전 일시정지 및 후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동일 주차 공간으로 후진 진입을 시도한 B차량에게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A차량은 출차 및 라바콘 회피를 위한 후진 과정에서 주변 차량에 대한 확인 동작을 취하였고, 주차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구획 진입 동작이 우선시되는 지위

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사고는 B차량의 우회적인 과실이 신중히 구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소견은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며, 최종적인 과실 비율의 확정 및 책임 판단은 사법기관 또는 분쟁조정기구의 권한을 부기합니다.

이에, 도표 차51-2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요소 적용 및 분석 소견을 드립니다.

A차량

1. 기본 과실

B차량

1. 현저한 과실 +10

2. 서행 불이행 +10

상기 수정요소 및 분석 내역을 종합하여 A차량 0% B차량 100% 과실상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효과적인 사고 처리를 위해 상호간 완만한 합의를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름 :

자격번호 :

별첨1_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본 사건 과실비율 산정 근거자료 ※

- 의뢰 운전자의 사고접수 내역
- 의뢰 운전자에게 제공받은 사고당시 영상 자료
- 의뢰 운전자에게 제공받은 사진 자료
- 사고지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위성지도 및 로드뷰

본 소견서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및 판결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른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각종 교통사고 분석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된 소견서입니다. 이에, 추가적인 증거자료(CCTV, 당사자 증언, 수사기록 등)에 의해 본 소견서의 결론 및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국적인 가해자/피해자 확정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